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관련

- 가.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 12. 1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다 중 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mark>유흥시설</mark>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리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 관공 연장 ▲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딴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이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
	인 단독 이용만 가능(<u>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u>)
시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
	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
	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나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기능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기타

-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 (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 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 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 단, <u>2021. 12. 16. 0시 이전</u>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대회 등

-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 3. 이에,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사에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4.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 지침(수정) 식약처 1부.
 - 5.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포스터 1부. 끝.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 플래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카카오.초콜릿개술합의함,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덕류식품가공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전북음식문화연구회,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집단급식조리협회, 한국커피과학회, 한국향미유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푸드원텍(주),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교육원, (주)한국식품정보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주)세스코,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주)에프엠코리아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해숲식품안전솔루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양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식품안전정보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협회, 대한아이스크림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입육협회,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대한수의사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2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협중앙회장, 주류안전협회

주무관 시무관 **남백상** 과장 **최종동**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10874 (2021. 12.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관리총 괄과

전화번호 043-719-2060 팩스번호 043-719-2050 / lab98sj@korea.kr / 비공개(5)

힘내라 대한민국!